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관련 사항 개선〉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나목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만원 이하의 금액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비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생략)                                                            |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u>&lt;후단 신설&gt;</u> | ④ -----<br>-----<br>-----<br>- <u>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다.</u>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u>사본</u> <u>&lt;단서 신설&gt;</u>   | 2. -----<br>-----<br>----- <u>사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u> |
| <u>&lt;신설&gt;</u>                                                                | <u>가.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대통령선거경</u>                                                                     |

|                                                            |                                                                                                                                                                                                                                                                                     |
|------------------------------------------------------------|-------------------------------------------------------------------------------------------------------------------------------------------------------------------------------------------------------------------------------------------------------------------------------------|
| <p>&lt;신 설&gt;</p> <p>3. ~ 7. (생 략)</p> <p>⑤ · ⑥ (생 략)</p> | <p><u>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20만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정당 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인 경우</u></p> <p><u>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u></p> <p>3. ~ 7.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은 회계보고 시 각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sup>

1) **법 제40조(회계보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⑦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그런데, 지출 건이 많은 경우 영수증 첨부 등 회계서류가 방대해져 회계보고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sup>2)</sup> 20만원 이하의 금액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비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당 실무자의 회계보고 서류 작성이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변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검사도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종이 영수증과 달리 전자문서는 장기적·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므로 추적조사가 용이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증빙서류 사본의 전자적 형태 제출이 회계보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이는 1차 가공을 거친 자료라는 점에서 원본 증빙보다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회계보고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미제출한 원본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 종이영수증 등을 스캔 후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안 제40조제4항제2호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정금액 이하의 정치자금 지출건에 대해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제7항이 선거비용을 제외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 경비의 경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sup>3)</sup>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문언<sup>4)</sup>에 따라 해당 규칙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요청될 것임.

---

3) 현재 인건비 등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내역·영수일자·수령인 성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하고 있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4) 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

《 개정안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의 증빙서류 제출 생략 규정 》

| 구분                       | 개정안(제40조제4항제2호)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9조제7항)                                                                                                                                                                                                                   |
|--------------------------|---------------------------------------------------------------------------------------------------------------------------------------------------------------------------------------------|----------------------------------------------------------------------------------------------------------------------------------------------------------------------------------------------------------------------------------------|
| 증빙서류<br>제출 생략이<br>가능한 경우 | 가.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20만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인 경우 |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선거비용 제외)<br><br>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br><br>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
|                          | 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                                                                                                                                               | -                                                                                                                                                                                                                                      |

※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그 구현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및 추가적인 입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불편과 관리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하나, 이를 위한 별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 도입 시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의 생략가능 범위를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3 |